

# 강원지역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Investment Incentive Acts for Attracting Companies in Gangwon

박건영(Park, Kon-Young)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부교수(주저자)

라공우(La, Kong-Woo)

제주대학교 무역학과 부교수(교신저자)

## 목 차

- |                                  |                        |
|----------------------------------|------------------------|
| I. 서 론                           | IV. 투자유치 전략 및 정책적 개선방안 |
| II. 기업의 지역투자 의사결정 요인 및 지원제도      | V. 결 론                 |
| III. 지방자치단체별 투자유치 지원제도의<br>비교·분석 | 참고문헌                   |
|                                  | ABSTRACT               |

## 국문초록

기업유치를 통한 안정적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려하는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다.

기업은 지역의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입지를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지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기업유치 수단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기업의 투자목적, 투자규모, 투자시기 등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자체에서는 동일한 법률체계 하에서 유사한 지원을 통해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투자유치 활동의 성과와 연계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원지역에 적합한 차별화된 지원제도의 도입방안을 도출하였다. 특히 물류 및 오프수 처리 비용지원, 교육훈련보조금의 상향 조정 등 투자유치 지원제도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제어** : 기업유치, 지방투자촉진, 투자인센티브, 보조금

## I. 서론

외환위기 이후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면서 이를 위한 투자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기업의 투자는 수요창출을 통해 소득과 생산을 증가시키고, 자본의 생산능력을 확충시켜 소득과 생산증대에 기여하며, 나아가 생산성과 성장 잠재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매우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다.

MB 정부부터 시작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및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개편 등의 정부정책 변화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강원도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동계올림픽특구 및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강원원주혁신도시 등 도내 대규모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투자유치의 새로운 도약이 가능한 투자유치 중장기 비전·목표 및 미래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한편, 기업은 투자결정에 있어 입지선택은 중요한 사항으로 고려하게 된다. 투자입지 선정은 산업이나 업종에 따라 입지요인을 고려하여 적합한 입지를 선택하고자 한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연조건, 교통, 지가, 임금 등 다양한 입지여건을 토대로 유치활동에서 경쟁하게 된다.

따라서 입지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역에서는 인센티브를 통해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해 조세감면, 재정지원 및 인프라 지원 등 다양한 보조금제도의 운영을 통해 기업유치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 제도는 기업의 투자목적, 투자규모, 투자시기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상황에 따라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sup>1)</sup>.

그러나 현재 기업유치를 위해 활용되는 기업지원제도는 전국 지자체별로 커다란 차이점 없이 동일한 법률체계에서 유사한 지원을 통해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불리한 입지여건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데 한계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실질적인 투자유치 활동의 성과와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유치 전략을 강원도에서 공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된 지원제도의 도입과 지원체제를 정비하는 방안들을 찾아보고, 투자유치 지원제도의 개편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권종욱·이지석·김성이, “국내진출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인센티브의 영향력 분석”, 『무역학회지』 제29권 2호, 한국무역학회, 2004. 4, pp.185-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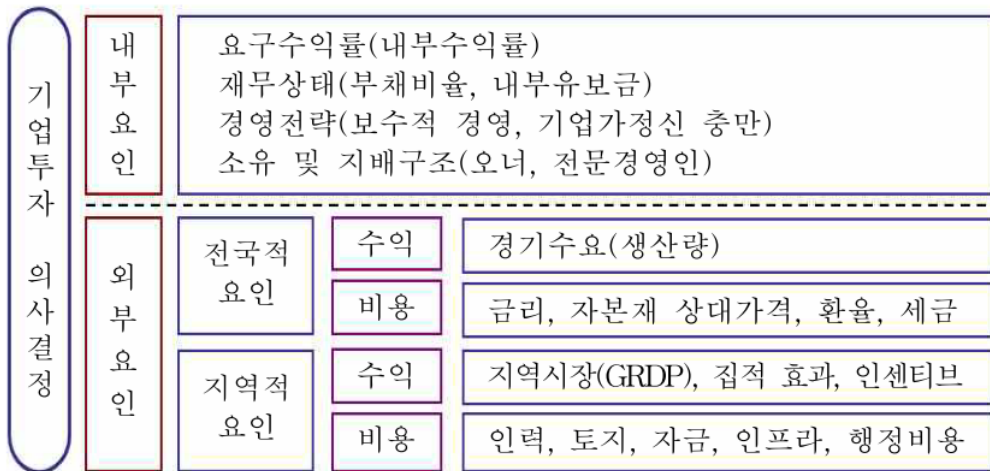
## II. 기업의 지역투자 의사결정 요인 및 지원제도

### 1. 기업의 지역투자 의사결정 요인

본 연구는 투자가 구체화 되는 과정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기업의 입지이론에서 투자 인센티브가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업의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으로 구분된다. 내부요인은 기업의 요구 수익률, 재무상태, 경영전략, 소유 및 지배구조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또한 외부요인은 전국적인 요인과 지역적인 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이를 각각 수익과 비용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sup>2)</sup>.

이러한 기업의 투자의사결정 요인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기업의 투자의사결정요인

지역투자의결정요인은 지역적 요인에 의존하게 되며, 이처럼 지역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지역의 투자환경(기업환경)이라 일컫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투자의사결정요인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단기간 해결할 수 있는 과제로서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투자유치 전략에 대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박재곤, “지역투자 결정요인과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 전략”, 산업연구원, 2010. 12, p.31.

## 2. 지방자치단체별 투자유치 인센티브 분석

### 1) 지방이전 및 투자촉진 지원제도의 고찰

#### (1) 지방투자촉진제도의 개요

지난 40여 년간 우리나라는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수도권외의 과밀, 지방의 상대적 정체와 소외현상 등으로 표출된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지역 간 개발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1980년대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수도권정비기본계획」이 만들어졌으며,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87~91)에서도 수도권 억제와 지역균형개발이 정책적으로 강조되었다. 1990년대에는 수도권에 대한 경제적 입지규제와 총량규제 제도의 도입을 통해 수도권으로의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갔고 공업배치기본계획과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등의 수립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청사진을 마련하였다<sup>3)</sup>.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적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지방에서의 기업활동 여건이 개선되지 않자 정부는 1999년에 세계·금융지원 위주의 다양한 기업 지방이전 촉진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마련된 동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종합토지세 등의 각종 세금 감면과 산업은행 등에서의 장기 저리 용자가 가능해졌지만 그 성과는 극히 미미하였다.

세계·금융지원만으로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한 정부에서는 2004년에 수도권기업 이전보조금을, 2008년에는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을 신설하였다. 이와 같은 보조금 제도는 기업이 투자를 통해 얻게 되는 사적 효과(private effect)와 사회가 누리는 공적 효과(public effect) 간의 차이를 메워주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 입지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에 기업이 입지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적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기업의 입지로 인해 지역사회는 ‘사회적 이익’을 누리게 된다. 따라서 지역사회가 누리는 ‘사회적 이익’과 기업이 누리는 ‘사적 이익’ 간의 차이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보조금과 같은 인센티브의 지급이 필요하다<sup>4)</sup>.

이와 같이 지방투자촉진제도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입지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입지 부지에 대한 매각 지원, 이전과 관련된 각종 행정정보처리 새로운 지역에 대한 입지/이전 지원금 지원, 이전지역에서의 고용, 교육활동에 대한 보조금지원으로 구분 할 수 있다<sup>5)</sup>.

3) 홍진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의 추진현황과 정책과제”, 『산업경제』, 산업연구원, 2012. 9, p.53.

4) 박재곤,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개선방안”, 산업연구원, 2010. pp.6-20.

(2) 지방투자촉진제도의 운영현황

2004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입지보조금이 전체의 70% 이상 차지하고 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난 6년 6개월 동안 지급건수로는 330건, 금액은 국비 2,558억원을 포함하여 약 4,081억원 지원하였다.

이중 입지보조금은 건수에서 71%, 금액에서 73%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투자보조금은 건수는 20%, 금액은 21%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은 지원 실적이 미미한 실정이다. 건수는 5%, 금액은 3%로 활용이 저조하다.

이렇게 입지보조금과 투자보조금은 활용도가 높으나,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의 활용도가 낮은 것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라는 특성상 토지매입, 건물 신축 및 매입 등에 많은 투자를 하지만, 신규 고용이나 고용한 인력의 숙련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는 많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1>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유형별 운영실태(2004년 ~ 2010년 6월)

	건수(수, %)				지방금액(억원, %)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국비	비중	지방비	비중	총액	비중
입지	234	70.9	248	69.3	1,896	74.1	1,066	70.0	2,962	72.6
고용	6	1.8	18	5.0	7	0.3	6	0.4	13	0.3
투자	66	20.0	82	22.9	496	19.4	354	23.3	850	20.8
교육 훈련	0	0.0	10	2.8	0	0.0	0	0	0	0.0
중복	24	7.3	0	0.0	158	6.2	97	6.4	256	6.3
합계	330	100.0	358	100.0	2,558	100	1,523	100.0	4,081	100.0

자료 : 박재곤,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개선방안”, 산업연구원, 2010.

주 : 건수는 중복지원된 경우를 분리하여 계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운영 실태를 시도별로 구분하여 보면, 충남, 강원, 전북, 충북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충남이 90건으로 27%, 강원이 73건으로 22%, 전북이 63건으로 19%, 충북이 45건으로 14%의 순으로 높다. 금액으로는 충남이 1,329억원으로 33%, 충북이 888억원으로 22%, 전북이 676억원으로 17%, 강원이 556억원으로 14%의 순으로 나타났다.

5) 문문철, “기업의 지방투자 결정요인과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대학원, 2011, p.32.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은 수도권에서 가까우면서 고속도로 접근성이 높고, 산업 용지 획득이 용이한 지역을 주로 선택한 것으로 판단되며, 부산, 대구 등 광역시로 이전한 경우는 적었으며, 수도권에서 먼 전남, 경남, 경북 등 광역도로 이전한 경우도 소수 나타났다.

〈표 2〉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시도별 운영 실태(2004~2010년 6월)

	건수(수, %)		지원금액(억원, %)					
	건수	비중	국비	비중	지방비	비중	총액	비중
부산	1	0.3	3	0.1	2	0.1	5	0.1
대구	11	3.3	24	0.9	24	1.6	48	1.2
광주	9	2.7	17	0.7	12	0.8	29	0.7
대전	6	1.8	75	2.9	55	3.6	130	3.2
강원	73	22.1	345	13.5	210	13.6	556	13.6
충북	45	13.6	590	23.1	298	19.6	888	21.8
충남	90	27.3	852	33.3	477	31.3	1,329	32.6
전북	63	19.1	348	13.6	328	21.5	676	16.6
전남	17	5.2	145	5.7	11	0.7	156	3.8
경북	2	0.6	8	0.3	2	0.1	9	0.2
경남	2	0.6	33	1.3	29	1.9	61	1.5
제주	11	3.3	118	4.6	77	5.0	195	4.8
합계	330	100.0	2,558	100.0	1,523	100.0	4,081	100.0

자료 : 박재곤,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개선방안”, 산업연구원, 2010.

### (3)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효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2,558억원 포함 총 4,081억원) 지급으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은 약 330개이며, 이들 기업의 투자금액은 5조 2,713억원, 고용자수는 4만1,867명, 신규 고용창출은 1만 8,283명 수준이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이전이라는 순수 효과를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어도 이전하는 경우에서 분리하기는 쉽지 않지만, 보조금 지급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을 촉진한 데에는 기여하였다. 이를 보조금 지원에 따른 성과로 해석하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억원 지원으로 기업은 0.8개 이전하고, 투자는 14억원이 발생하며, 고용은 10.3명이 발생하는데 이 중에서 해당 지역에서의 4.5명 신규 고용을 창출한 것이다. 이를 평균적인 기업 이전에 소요되는 보

조금 규모로 해석하면, 종업원 수 127명(신규 고용은 55명)이고, 투자액은 173억원인 기업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1개 이전하는 데 보조금 12억4,000만원(국비 7억 8,000만원 포함)이 소요되었다.

한편, 총 투자금액 중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1%이고, 전체 고용 중에서 신규 고용의 비중은 43.7 %를 차지하여 지방이전에 따라 함께 이전하는 종업원의 비중은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표 3〉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효과(2004~2010년 6월)

시도	투자금액		고용자수		신규 고용인원		1억원당 고용효과	
	투자(억원)	비중(%)	고용(명)	비중(%)	신규(명)	비중(%)	전체고용	신규고용
부산	40	0.1	95	0.2	27	0.1	2.37	0.67
대구	756	1.3	3,247	7.8	2,623	14.3	4.29	3.46
광주	496	0.9	462	1.1	275	1.5	0.93	0.55
대전	555	1.0	1,026	2.5	715	3.9	1.84	1.23
강원	6,969	12.2	8,430	20.1	3,038	16.6	1.21	0.44
충북	17,077	29.8	6,880	16.4	3,059	16.7	0.40	0.18
충남	19,212	33.6	11,034	26.4	5,052	27.6	0.57	0.26
전북	7,056	12.3	4,134	9.9	1,994	10.9	0.58	0.28
전남	1,678	2.9	965	2.3	639	3.5	0.57	0.38
경북	302	0.5	116	0.3	64	0.4	0.38	0.21
경남	1,598	2.8	2,713	6.5	460	2.5	1.69	0.28
제주	1,474	2.6	2,765	6.6	337	1.8	1.87	0.22
합계	57,213	100.0	41,867	100.0	18,283	100.0	0.73	0.32

자료 : 박제곤,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개선방안”, 산업연구원, 2010.

시도별로 보면 이전기업의 투자금액은 보조금 지원금액이 많았던 충남, 충북, 전북, 강원 등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규 고용 창출은 대구가 2,600여명(전체의 14.3%)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수도권의 콜센터가 대구로 다수 이전함에 따라 투자금액은 낮으나 인력 비중이 높고, 또한 기존 인력의 이전(19.2%)보다는 신규 고용 형태로 인력을 충원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Ⅲ. 지방자치단체별 기업유치 지원제도 비교·분석

#### 1.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지원제도의 개요

지방자치단체별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의 시행은 대부분 중앙정부가 정한 세제와 재정적 인센티브 기준에 준해서 지원·운영되고 있다.

조세인센티브와 달리 보조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따라 중앙정부가 매칭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 재정력이 풍부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보조금을 얻어내어 기업유치에 더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기업유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커지면서 기업유치 인센티브 경쟁을 촉발시켜 각 지역별 재정여력에 따른 빈인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유치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지원제도는 대부분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유형은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을 위한 기타 보조금 등 별도의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을 자체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다.

#### 2. 지방자치단체별 기업유치 지원제도 비교

##### 1)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지원제도 운영현황

기업유치란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의 본사나 공장을 관할구역 안으로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지원보조금의 형태는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이전보조금(본사·공장·연구소), 투자촉진장려금, 초기정착보조금, 기업지원우대자금, 성과보상 등이 있다<sup>6)</sup>. 이러한 보조금 지원제도는 지속적인 변화를 거듭하면서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차별성을 확보해 나아가고 있다.

전국 광역시·도에서 운영중인 보조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자체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차이점은 미비하다.

6) 김영표, “국내 자치단체의 기업지원 관련조례의 실태와 시사점”, 경남발전연구원, 2007. 10, p.19.



특히, 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 본사이전보조금, 공장이전보조금, 연구소이전보조금의 경우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훈련보조금 및 고용보조금 등에 대해서는 산자부 지원기준에 따라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부분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지자체별로 서비스업지원(부산, 충북), 컨설팅보조금(광주, 경북), 기술이전사업화지원(대전), 역외유출방지지원(대전), 미래유망산업지원(전남) 등 차별화된 지원 보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표 4> 광역자치단체별 지역의 국내기업유치 지원보조금 유형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입지보조금		○	○	○	○		○		○	○	○	○	○	○	○
고용보조금			○	○	○	○	○		○	○			○	○	○
교육훈련보조금			○	○	○	○	○		○	○			○	○	○
시설보조금		○	○		○	○			○	○	○	○	○	○	○
본사이전보조금					○	○			○	○	○	○	○	○	○
공장이전보조금		○	○						○	○	○	○	○	○	○
연구소이전보조금									○	○	○	○			
서비스업지원		○								○					
컨설팅보조금					○									○	
기술이전사업화지원						○									
역외유출방지지원						○									
미래유망산업지원													○		
성과보상			○	○		○	○		○	○	○	○	○	○	○

2) 타시도에서 운영중인 차별화된 보조금

전국의 광역시·도에서는 보조금지원 제도의 차별화된 운영을 통하여 기업유치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보조금을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타시도에서 운영중인 차별화된 보조금

유형	지자체	내용	강원도와 비교
투자진흥기금	부산	제5장 부산광역시투자진흥기금	- 관련규정 없음
	충북	제13조(투자진흥기금)	
금융지원	부산	제14조(금융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이 공장이나 분사 또는 연구소를 지역 안으로 이전하거나 신설·증설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우선 지원한다.	- 부산 강행규정, - 강원도 임의규정
고용보조금	대전	제11조(고용보조금 지원) 신규채용 10명을 초과, 초과인원 1인당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60만원 이하	- 콜센터, - 폐광지역 지원
	경북	제15조(고용보조금 지원) 국내기업이 내국인을 20명을 초과, 상시 고용인원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지원.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교육훈련보조금	대전	제12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상시고용인원 채용, 10일이상의 교육훈련을 실시 인원이 10명을 초과, 초과인원의 교육훈련비용 중 1인당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60만원 이하	- 콜센터, - 폐광지역 지원
	경북	제16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국내기업이 내국인이 20명을 초과, 교육훈련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안에서 지원,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컨설팅보조금	광주	제24조(컨설팅보조금의 지원) 투자유치기업이 시 관할구역 내에 투자하기 위하여 컨설팅을 실시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컨설팅보조금을 지원	- 관련규정 없음
기술이전·사업화지원	대전	제13조(기술이전·사업화 지원) 시장은 유치기업이 사업개시 후 1년 이내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 관련규정 없음
역외유출방지지원	대전	제16조(기업 역외유출 방지지원) ①시장은 지역선도산업, 지역특화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지식서비스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 기업의 시구역 외의 지역으로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	- 관련규정 없음
미래유망산업지원	전남	시행규칙 : 제12조(미래유망산업 지원특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미래 성장유망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 1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 지원	- 관련규정 없음
서비스지원	충북	제29조의2(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 관련규정 없음
	부산	제13조(생산자서비스업 지원)	

먼저, 투자진흥기금의 운영이다. 부산과 충북의 경우는 투자유치 지원(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매입, 공장부지 매입비 용자지원 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투자진흥기금(도 및 시군의 출연금, 지방채 발행, 기금운용수익금)을 설치·운영중에 있다. 현재 강원도의 경우에는 이러한 투자진흥기금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조례로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이전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한 지원에 있어 부산의 경우는 “우선 지원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강원도는 “지원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이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의 성격보다 중소기업의 지원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셋째,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에 대해서는 대전과 경북의 경우는 이전기업에 대해 모두 지원하고 있다. 특히 경북의 경우는 1인당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안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강원도의 경우 2013년 조례 개정을 통해 콜센터와 폐광지역에 한하여 6개월간 월 6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넷째, 광주는 투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컨설팅을 실시한 경우, 이전 결정기업에 대해 사후적으로 컨설팅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비해 강원도의 경우는 이전이 결정된 외국기업에 한해 사후적으로 컨설팅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다섯째, 유치기업이 사업개시 후 1년 이내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술이전·사업화에서 기업 부담금의 20%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강원도의 경우는 이러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여섯째, 대전의 경우는 지역선도산업, 지역특화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지식서비스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 기업이 역외로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강원도는 도내 기존기업이 신설·증설에 따른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비용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일곱째, 전남에서는 미래 성장유망산업 관련 기업이 1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강원도는 이러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충북의 경우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부산의 경우는 생산자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이전할 경우에 충북과 부산은 별도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강원도의 경우는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관광사업에 대해서 특별지원을 하고 있으나 서비스분야에 대한 지원이 아닌 기반시설에 대한 보조금만 운영하고 있다.

### 3. 지자체별 기업유치 지원제도 분석의 시사점

수도권 이전 및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 지원의 경우에는 모든 지자체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자체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만, 부산시나 광주시를 제외하면 기업 이전에 따른 보조금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최고 지원가능 금액을 50억 원으로 정하고 있어 지자체간 차별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부산시는 상시 고용인원 30명 이상인 3년 이상 수도권 소재기업이 이전하여 고용규모를 유지하는 경우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하고, 광주시는 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 입지보조금의 형태로 분양가액의 45% 범위 내에서 최대 120억 원까지 지원한다.

강원지역의 이전기업 지원시책은 타 지자체와 대등소이하나, 조례에 공장운영과 관련된 물류비용의 일부를 최대 1년간 제품 운송비의 50%의 범위 내에서 6개월 단위로 지원(최대 3천만원)하고 있는데, 충청북도의 경우는 물류비용을 3년간 지원하고 있으며, 오페수(물류) 처리비용의 50%범위 내에서 최고 3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충청북도는 고용효과(200명)가 높거나 투자금액(1천억원 이상)이 많은 이전기업에 대해 특별지원하고 있어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시책의 차별화하고 있다.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의 경우 최대 지원기한이 6개월로 지자체간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지원요건이나 지원 금액에 있어서는 지자체간 차이가 존재하여 차별화 요인이 나타난다. 신규 채용인원 기준은 10명~30명의 범위에서 차별화되어 있고, 보조금 지원은 1인당 30만원~80만원까지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운전자금, 창업지원자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명칭만 다를 뿐 지자체별 금융 및 자금지원은 유사하게 나타나 차별화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경우는 지자체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보다 지자체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 IV. 기업유치 전략 및 정책적 개선방안

### 1. 기업의 투자유치 전략

기업의 지역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기업이 지역투자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물적 인프라, 인력, 협력업체 집적, 시장수요 등 이다. 따라서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지역의 투자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단기적으로 인센티브의 확충, 행정적 지원체계의 정비 등을

통해 정책의지를 시장에 전달하여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먼저,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투자의욕과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국내 및 지역의 투자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권역별로 특화클러스터 육성을 통하여 집적이익이라는 외부효과를 창출하여 기업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 또한 지방의 투자환경을 단기간에 개선하는 것은 어렵고 효과도 낮기 때문에 권역별 장기발전전략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입지여건 개선을 통해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센티브의 확충, 행정지원체계의 정비 등 행정적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정책의지를 시장에 전달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 인센티브는 EU의 구조 기금, 영국의 투자보조금(GBI) 등과 같이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프로젝트에 따라 맞춤형으로 차등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투자의 상담부터 실행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 강원지역 기업유치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본 연구에서 제시한 투자유치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중장기적인 과제와 단기과제로 구분하여 수립되어야 하는데, 중장기과제에 대한 연구는 기존에 상당부분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단기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에 따른 투자유치 대응전략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 지역의 기업유치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것은 수도권에서의 공장건축 제한 완화와 지방이전 보조금의 축소로 요약된다.

수도권에서 공장건축 제한 완화로 인해 기업들은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고 시장접근성이 높고, 산업집적효과가 큰 수도권에서의 활동을 선호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 대응방안은 물류비용 절감과 오펜수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물류보조금으로 공장가동시점으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제품 운송비의 50% 반기별로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조례를 충청북도의 사례와 같이 최대 3년간 50%의 범위 내에서 최고 3억원까지 지원도록 개정해야 한다.

또한 수도권 기업 이전에 대한 보조금 축소에 대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원도에서 별도의 예산을 추가적으로 편성하여 지원하는 것은 현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보조금 이외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축소되는 보조금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전효과(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가 큰 이전 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위한 지역별, 산업별 차별화된 보조금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2) 단기적 과제해결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정책수단은 크게 촉진수단과 규제수단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촉진수단은 투자인센티브 개선 등 재정적, 제도적 수단과 투자유치 타깃팅 및 마케팅활동, 원스톱행정 서비스 제공 등 행정적, 전략적 수단이 대표적이다.

규제수단으로는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진입 및 퇴출 관련규제, 인허가 등 기업경영 활동 규제 등이 가능하다.

〈표 6〉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수단

정책수단	세부수단	유치수단
촉진수단	제도(인센티브)	투자인센티브 개선 인센티브의 효과 제고
	전략(유치활동)	투자유치 타깃팅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규제수단	시장(경쟁촉진)	진입 및 퇴출규제(지분, 대상 제한) 경영활동규제(인허가, 등록, 승인)

### (1) 투자 인센티브 개선

기업의 투자결정에서 중요한 요인은 시장규모 및 성장성, 생산비용, 인력의 숙련수준 등으로 수익증대, 비용절감, 위험감소 등이기 때문에 경제적 요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투자인센티브는 부수적인 요인으로 고려하게 된다.

그러나 투자인센티브가 정책수단으로 의미를 갖는 것은 시장, 비용 등 경제적 요인들은 정부가 단기간에 개선이 어려운 제약이 있는 반면, 투자인센티브는 단기간에 조정이 가능한 변수로 정부의 정책의지가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signalling effect)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가 기업유치를 위한 개선 가능한 인센티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기업에 대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지자체간 기업 이전 보조금 지원에서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만큼, 교육훈련보조금에서의 차이 축소를 위한 조례 개정 검토 필요하다. 현재, 부산시의 경우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8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강원도의 경우는 6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둘째, 대규모 투자에 대한 특별지원의 확대이다. 지역으로의 대기업의 이전은 전후방 연관 산업과 하청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동반이전을 유발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에 대한 특별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 충청북도의 경우, 고용효과(200명)가 높거나 투자금액(1천억원 이상)이 많은 이전기업에 대해 특별지원하고 있다.

셋째, 기업 투자유치서비스 만족도 개선을 통한 추가적인 국비지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시한 투자유치 서비스만족도 조사에서 종합만족도상위 10위내 이내에 지자체에는 국비지원액의 5% 추가 지원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투자유치 서비스만족도 개선 노력은 기업유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이전기업에 대한 국비 지원비율을 상향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 가능하다.

넷째, 전입기업 종업원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다. 전입기업에 대한 지원서비스 뿐만 아니라 종업원 가족을 위한 주거·교육·의료 등의 생활여건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 강릉시의 경우는 전입기업 종업원의 초중고 자녀에게 학비·급식비를 지원하며, 부산은 이전 기업의 근로자 가족에 대한 이주비용 지원 및 유치원(어린이집) 입학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 (2) 투자유치 타깃팅

투자유치활동에서 투자유치대상의 선정은 투자유치 전략의 주요 내용 중의 하나인데, 이때 투자유치의 기준으로 가능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능성은 투자가 실현될 확률이 높은 것을 의미하고, 필요성은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투자유치 성과측면에서 보면 가능성은 양적인 측면을, 필요성은 질적인 측면을 반영하므로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이 필요하다. 단기적인 성과를 높이기 위해 가능성이 높은 투자를 유치한다면 상대적으로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높지 않은 투자도 유입되는 현상 발생한다. 반면, 필요성이 높은 투자는 파급효과가 큰 투자이나 지나치게 필요성만 강조할 경우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기 어렵거나 실적이 저조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따라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커서 필요성이 높고 가능성도 높은 투자가 중점 유치대상 이므로 이를 전략적으로 유치활동을 벌여야 한다.



### (3) 유치기관의 전문성 강화와 실질적 원스톱 서비스 제공

기업의 효과적인 투자유치와 실효성 있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투자유치기관의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투자별로 전담인력(PM)을 배치하여 투자의 상담, 준비, 인허가, 실행,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필요하다.

원스톱 서비스는 잠재적 투자자 발굴에서부터 입지 선정, 공장 설립,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먼저, 투자자발굴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만으로는 제약이 있으므로 외부전문가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인사로 활용해야 한다. 이들을 통해 정기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투자유치활동을 수행하며, 성공적인 투자유치활동에 대해서는 보상시스템을 갖추어 성과를 제고할 수 있다.

둘째, 투자유치 이후 단계의 사후관리도 중요한데, 입지한 기업이 지역의 소득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역할 이외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기존 기업들은 향후 증설투자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으며, 외부기업이 해당지역으로 신규 투자하는 과정에서 기존 기업들의 응답내용이 투자결정에서 중요한 정보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강원테크노파크와 연계하여 투자유치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강원테크노파크는 지역의 발전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산업 발전전략에 부합하는 타깃기업을 유치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위한 정책수단을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야 한다.

### (4) 기업유치 정보의 정비와 홍보체계 구축

기업측면에서 고려하여 지적재산권의 집적이나 시장의 근접성, 관련기업의 확보, 인재확보, 교통망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더하여 기업측에 주거환경이나 복지제도, 기업정보의 매칭, 지방세뿐만 아니라 우대조치 등도 포함하여 포괄적이고 알기 쉽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강원지역 기업유치의 홍보에 있어서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학계, 기업인 등 제각기 인적 네트워크를 지니고 있는 지역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이 총체적으로 홍보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강원도내 기업지원기관 상호간의 정보교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연관기업정보 DB를 생산하고 전후 연관기업의 투자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한 협력시스템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 IV. 결론

기업의 투자는 수요창출을 통해 소득과 생산을 증가시키고, 자본의 생산능력을 확충시켜 소득과 생산증대에 기여하며, 나아가 생산성과 성장 잠재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매우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연조건, 교통, 지가, 임금 등 다양한 입지여건을 토대로 유치활동을 전개하며, 입지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역에서는 인센티브를 통해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그러나 현재 기업유치를 위해 활용되는 기업지원제도는 전국 지자체별로 커다란 차이점 없이 동일한 법률체계에서 유사한 지원을 통해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불리한 입지여건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데 한계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실질적인 투자유치 활동의 성과와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유치 전략을 강원도에서 공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된 지원제도의 도입과 지원체제를 정비하는 방안들을 찾아보고 다음과 같은 기업유치 지원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중앙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에 따른 대응전략으로서 물류비용 절감과 오폐수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충청북도의 사례와 같이 최대 3년간 50%의 범위 내에서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해야 한다. 또한 이전효과(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가 큰 이전 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위한 지역별, 산업별 차별화된 보조금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유치기업에 대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상향 조정, 대규모 투자에 대한 특별지원의 확대, 기업 투자유치서비스 만족도 개선을 통한 추가적인 국비지원, 전입기업 종업원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 등의 단기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셋째, 투자유치 타깃팅 활동이 요구된다.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커서 필요성이 높고 가능성도 높은 투자가 중점 유치대상이므로 이를 전략적으로 유치활동을 벌여야 한다.

넷째, 유치기관의 전문성 강화와 실질적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특히 강원TP를 적극활용하여 산업발전계획 수립에서부터 유치전략 활동에 이르기까지 상호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타깃기업의 발굴에서 사후관리의 전과정을 원스톱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다섯째, 기업유치 정보의 정비와 홍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강원지역 기업유치활동에 있

어서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학계, 기업인 등 제각기 인적 네트워크를 지니고 있는 지역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이 총체적으로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투자지원제도에 관한 연구로 한정되어 있고, 지역적 범위가 강원지역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성을 지닐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기업입지 결정요인과 투자지원제도 상호연관성의 분석을 통해 보다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경상북도, 「외국인 투자환경, 투자유치 전략 및 타킷기업 발굴 컨설팅」, 2007.
- 권종욱·이지석·김성이, “국내진출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인센티브의 영향력 분석”, 『무역학회지』 제29권 2호, 한국무역학회, 2004, 4.
- 금성근, 『부산지역 기업유치 인센티브 강화방안』, 부산발전연구원, 2006. 1.
- 김봉한·김홍기·신동호, 『충남 외국인투자유치 방안 연구』, 2007. 10.
- 김승진, 『투자인센티브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9.
- 김영표, 『경남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유치전략』, 경남발전연구원, 2011. 10.
- \_\_\_\_\_, 『경남의 해양플랜트산업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경남발전연구원, 2013.
- \_\_\_\_\_, 『국내 자치단체의 기업지원 관련조례의 실태와 시사점』, 경남발전연구원, 2007. 10.
- 김진기, 『강원도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연구』, 2008. 12.
- 류종현·김인중, “수도권 규제완화와 강원도”, 『정책메모』, 강원발전연구원, 2014. 4.
- 문문철, “기업의 지방투자 결정요인과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대학원, 2011.
- 박노선, “기업 지방유치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인센티브 관련 법제적 고찰”, 경북대학교 대학원, 2007.
- 박재곤,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개선방안”, 산업연구원, 2010.
- \_\_\_\_\_, “지역투자 결정요인과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 전략”, 산업연구원, 2010. 12.
- 채성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충북발전연구원, 2012. 3.
- 최경규, 『서울의 외국인 투자유치정책 방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 이병기,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기업투자환경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05.
- 홍진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의 추진현황과 정책과제”, 『산업경제』, 산업연구원, 2012.

Bodenman, John E.,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 Spatial Dynamics of Investment Advisory Services : the Case of Metropolitan Philadelphia, 1983-2003, The Industrial Geographer, Volume 2, Issue 2, 2004.

Armstrong, H. and Taylor, J., Regional Economic and Policy, Blackwell, Oxford, 2000.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Introduction for R&D Investment, 2005.

HM Treasury, Green Book : appraisal and evaluation in central government, 2003.

## ABSTRACT

### A study on improvement of Investment Incentive Acts for Attracting Companies in Gangwon

Park, Kon-Young\* · La, Kong-Woo\*\*

Stable economic growth and job creation through the attracting companies is a major challenge for local governments.

Companies are asked to select a place to invest and finally considering the conditions. Local governments will take advantage of a variety of incentives to attract companies the means to overcome the unfavorable position relative to conditions.

Investment incentives should be appli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investment objective, investment, corporate investment period. However, Local governments has developed a similar promotion activities through support under the same legal system. This does not result in a substantial investment activities.

In this study, we derive the Introduction of differentiated support system for Gangwon Province. In particular, logistics and waste water treatment cost support, upward adjustment of training subsidies were looking for concrete improvements in the investment support system.

**Key Words** : Attracting company, Investment incentives, Investment subsidies

---

\* Professor, Duksung Women's University

\*\* Professor, Jeju National University